

# 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Q & A

## 1 [주택] 지원대상의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?

○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, 3의2호, 6호, 7호에 따라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며, 민간임대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.

※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하지 않는 영구임대, 국민임대, 분양전환공공임대 등은 본 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주택유형	유형
행복주택	신혼부부·한부모
통합공공임대주택	신혼부부·한부모
매입임대주택	신혼·신생아 I,II
전세임대주택	신혼·신생아 I,II
국민임대 (신청불가능)	
영구임대 (신청불가능)	

## 2 [주택]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?

○ 신청 시에는 필수가 아닙니다. 단, 신청 시 공공임대주택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. 선정이 되면 지원 전에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정부24에 시스템 보완해주시면 됩니다.

## 3 [소득]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?

○ 소득 산정 시 태아는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, 자녀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## 4 [소득]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?

○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이하(맞벌이 가구인 경우 120%이하)  
\* 2인가구인 경우 10%p 가산하며 최근 3개월(2025. 3월 ~ 5월)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.

※ 공고문 7페이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

## 5 [소득]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 하지 않나요?

-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관련서류(건강보험서류 3종)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## 6 [지원기간] 재혼가정입니다.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?

- 혼인기간은 혼인(재혼)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.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2018. 1. 1.이후 혼인신고 인지 확인하면 됩니다.

## 7 [지원기간] 자녀 출산 시 지원기간이 연장되나요?

- 막내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자녀출산 시 신청 가능 기간이 연장 됩니다.

## 8 [지원횟수] 1회 신청 시 입주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가 지원되나요?

- (2025년 기준) 신청 후 선정되면 7월 이후 최대 6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원되며 분기별 자격검정 후 지급됩니다. 임대료 지원은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## 9 [지원횟수] 신청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?

- 신청가능 기간은 혼인 및 자녀출산 7년이내입니다. 위 조건을 만족 시 입주기간 내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- \*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은 상이하며, 자녀출산 시 임대료 지원 신청 가능 기간이 연장됩니다.

## 10 [자격] 이혼한 경우 지원 불가능한가요?

- (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) 이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분기별 자격 검정 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(자녀출산가구의 경우) 자녀출산 가구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.

## 11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?

- (예산범위 이내)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모두 선정
- (예산범위 초과)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 선정  
 [(1순위)다자녀 → (2순위)1자녀 → (3순위)신혼부부]로 1차 우선순위 선정 후 각 순위 내에서 소득기준[건강보험료 납부액 낮은순 → 높은순] 적용하여 지원가구 선정  
 (예시1) 신청가구 1,700가구 [다자녀 900가구, 1자녀 400가구, 신혼부부 400가구]인 경우  
다자녀 900가구 중 , 건강보험료 납부액 낮은 850가구 선정 (예산범위 내)  
 (예시2) 신청가구 1,700가구 [다자녀 800가구, 1자녀 600가구, 신혼부부 300가구]인 경우  
다자녀 800가구, 1자녀 50가구 최종 선정(예산범위 내)

## 12 [지원내용] 월 3만원만 내면 살 수 있나요?

- **표준임대조건 기준**으로 개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(주택토지과)가 신청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합니다. 2025년 7월 이후 최대 6개월분의 임대료 지원하며,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(LH, JPDC, JDC)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  
 ※ 단, 임대보증금, 관리비 별도이며, 표준임대조건이 아닌 전환보증금 제도 이용 시 개인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 ※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

- ① 임대차 보증금 감액 후 월 임대료 증액 표준임대료 중 3만원 제외한 금액 지원
  - ② 임대차 보증금 증액 후 월 임대료 감액 실제 납부 임대료 중 3만원 제외한 금액 지원
- ☞ (예시) (단위: 원)

	보증금	월 임대료	월 지원금	본인부담금
표준임대조건	10,000,000	260,000	230,000	30,000
보증금 감액	7,000,000	268,750	230,000	38,750
보증금 증액	13,000,000	242,500	212,500	30,000

## 13 주거비 지원 유사 사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

- 주거비를 지원받는 국토부 등 타 기관,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